

신청접수번호 : m-RAPA-2111-7242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 |
|--|--|
| 1. 공사내용 | |
| 공사명 | 충남내포 RM14블록 디에트르 신축공사 |
| 공사 장소(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 |
| 공사의 종류 |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 |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 접지단자 위치 |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
|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
|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 |
|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 |
|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 5.기타 협의사항 |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1년 12월 01일

| | | |
|-----|------------|---------------|
| 구분 | 법인/단체명(상호) | 대표자(성명) |
| 건축주 | 대방이앤씨 주식회사 | 장정민 |
| 대리인 | 나라기술단 | 박우현 (인동의함) |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2동, 105동, 117동, 118동, 122동, 124동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2동, 105동, 117동, 118동, 122동, 124동
2. 지하2층 : 104동 EPS, 110동 EPS, 112동 EPS, 120동 EPS

3. 기타 협의사항

-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건축주등*이 필수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신청내역서의 "착공통보" 창에 등록)
 -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
 - ③ 착공예정일
 - ④ 준공예정일
 - ⑤ 공사요청일
 - ⑥ 공사현장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건축주등 : 건축주 외 건축사, 건설사, 통신설계사, 시행사,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
※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최소5개월 소요)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설계명 PROJECT TITLE

충남내포 RM14블럭
디에트르 신축공사

주기 NOTE

도면 정보
DRAWING INFORMATION

| 일자(DATE) | 작성(RAPA) | 승인(KT) | 승인(SKT) | 승인(LGU+) |
|----------|----------|--------|---------|----------|
| 21.11.17 | JH.KWAK | HS.MIN | JS.KIM | HW.LEE |

| 일자(DATE) | 작성(RAPA) | 승인(KT) | 승인(SKT) | 승인(LGU+) |
|----------|----------|--------|---------|----------|
| | | | | |

| 일자(DATE) | 작성(RAPA) | 승인(KT) | 승인(SKT) | 승인(LGU+) |
|----------|----------|--------|---------|----------|
| | | | | |

| 일자(DATE) | 작성(RAPA) | 승인(KT) | 승인(SKT) | 승인(LGU+) |
|----------|----------|--------|---------|----------|
| | | | | |

| 일자(DATE) | 작성(RAPA) | 승인(KT) | 승인(SKT) | 승인(LGU+) |
|----------|----------|--------|---------|----------|
| | | | | |

설계사무소명 DRAWING OFFICE

나라기술단

발주처 CLIENT

축척 SCALE

1/NONE

일자 DATE

2021. 11

도면번호 SHEET NO.

도면명 SUBJECT TITLE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계통도

[중계장시/옥외안테나 설치장소 확보기준]

| 구분 | 내용 |
|--------|--|
| 옥외 안테나 | 완벽한 송수신의 확보를 위하여 각각 4m 이상의 높이를 갖는 1개 이상의 설치장소 |
| 중계장 | 완전하나 옥외가스통과를 위한 구조물로서 각각 2m 이상의 면적(높이 2m 이상)을 갖는 1개 이상의 설치장소 |

| 공사주체 | 상호 | 내용 |
|---------|----|------------|
| 이동통신사업자 | RF | RF 중계기 |
| | RF | 광중계기 |
| | RF | 송수신 안테나 |
| | RF | 옥외 서비스 안테나 |
| | RF | 옥내 서비스 안테나 |
| 건축주 | RF | 완성단자 |
| | RF | 중계단자 |
| | RF | 중계기용 단자구 |
| | RF | 중계기용 단자구 |

1. 옥외 안테나 설치시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는 옥외안테나 설치 가능 위치로 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 설치시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는 옥외안테나 설치 가능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옥외 안테나 설치시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는 옥외안테나 설치 가능 위치로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계통도
축척=1/NONE